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 12. 29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 ㉠ 제출일자 : 95. 12. 21
- ㉡ 제출자 : 구 청 장
- ㉢ 회부일자 : 95. 12. 22
- ㉣ 상정 및 의결
 -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 제10차 내무위원회 상정 : 95. 12. 26
 - 제10차 내무위원회 의결 : 95. 12. 26

㉤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 제안사유

- 자치구의회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기구승격을 위하여 직위와 직급을 변경코자 함.

㉡ 주요골자

- 기구승격

현	행	조	정
의	회	의	회
사	무	사	무
과		국	

㉢ 관련근거

- 기획122000-1085(95. 12. 19) 자치구의회사무과의 사무국 정원승인

3. 검토의견(전문위원 : 최영찬)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에게 보다 질적수준과 민선단체장 직급상향으로 의회기구를 승격·보강 발전하므로 집행부의 견제기능으로서 역할을 다 할 때 명실상부한 주민 복리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59
----------	-------

제출년월일 : 95. 12.

제출자 : 달서구청장
(기획감사실)

1. 제안이유

- 자치구의회가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코자 정원이 승인되고 관련 직급 및 직위가 변경됨에 따라 승인내용과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관련근거

- 기획 12200-1085(95. 12. 19)
자치구의회 「사무과」의 「사무국」 정원승인

3. 주요골자

○ 기구 승격

현	행	조	정
의 회 사 무 과		의 회 사 무 국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호중 “의회사무과”를 각각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3조중 “소속기관”을 “의회사무국, 보건소”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명 및 제1조중 “의회사무과”를 각각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u>의회사무과</u> 1. (생략) 2. <u>의회사무과</u> 3 ~ 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u>의회사무국</u> 1. (현행과 같음) 2. <u>의회사무국</u> 3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u>소속기관</u> ,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u>의회사무국</u> , <u>보건소</u>	